

성남 금토지구 중흥S-클래스 특별공급(다자녀 가구) 안내문

■ 공급대상 및 자격요건

구분	대상자
신청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(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)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(태아 포함)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-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(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,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 -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. -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(만 19세 미만)이어야 함. 3명 이상의 자녀 중 부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. -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. -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. 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, 제40조 제3항) ※ 소형·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
사전당첨자 선정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다자녀가구 및 노부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, 예외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%를 최초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, 나머지 주택(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 포함) 50%는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 거주자(우선 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)에게 공급하며, 경쟁이 있는 경우 「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」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. 또한,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(연월일 계산)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. - 경기도 우선 공급세대수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또는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으며,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 충족이 가능한 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. 단, 성남시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또는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 충족이 가능한 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고, 경기도 신청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(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)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. - 경기도 우선 공급 세대수에 낙첨된 경기도 거주자는 수도권 대상 세대수 50%를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경기도 및 해당건설지역 우선공급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-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(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)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, 사전당첨자는 부적격 사전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■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

평점요소	총배점	배점기준		비고
		기준	점수	
계	100			
미성년 자녀수 (1)	40	미성년 자녀 5명 이상	40	■ 자녀(태아, 입양아, 전혼자녀 포함)는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
		미성년 자녀 4명	35	
		미성년 자녀 3명	30	
영유아 자녀수 (2)	15	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	15	■ 영유아(태아, 입양아, 전혼자녀 포함)는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
		자녀 중 영유아 2명	10	
		자녀 중 영유아 1명	5	
세대구성 (3)	5	3세대 이상	5	■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)이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
		한부모 가족	5	
무주택기간 (4)	20	10년 이상	20	■ 배우자의 직계존속(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)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,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■ 청약자가 성년(만 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(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)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
		5년 이상 ~ 10년 미만	15	
		1년 이상 ~ 5년 미만	10	
해당 시·도 거주 기간 (5)	15	10년 이상	15	■ 공급신청자가 성년자(만 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로서 수도권(서울-경기-인천)에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* 시는 광역시·특별자치시 기준이고, 도는 도·특별자치도 기준이며, 수도권의 경우 서울-경기-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·도로 본다.
		5년 이상 ~ 10년 미만	10	
		1년 이상 ~ 5년 미만	5	
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(6)	5	10년 이상	5	■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, 금액,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

유의사항

- (1), (2):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[이혼·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(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)에 한함] ※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(전혼 배우자의 자녀)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
- (3):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
- (3), (4):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53조를 적용
- (4), (5):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
- (6):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
※ 동점자 처리
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(연월일 계산)이 많은 자